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정 2020.10.23 개정 2022.05.24 [안전품질처 안전혁신부 042-600-8048]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장·감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및 1급 본부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인사규정 적용 대상인 1급 본부장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 문책 시 인사규정에 앞서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2 장 책 무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공사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장 문책의 사유

제4조(문책사유) 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별표] 안전 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에 따른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사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 발생 즉시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②「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 4 장 문책의 종류와 효과

제5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문책은 해임·연임제한·업무배제·기본급 감액·경고·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해임
- ② 연임제한
- ③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④ 기본급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 ⑤ 경고 : 임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주의 : 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장 문책의 절차

- **제6조(문책의 절차)** ① 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임원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 ② 임원 인사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임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③ 문책양정, 임원 인사위원회의 심의·표결, 항고,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및 임원 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임원복무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문책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다.
- ④ 사장은 문책 절차 종료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문책절차는 사고 조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 1. 대상 임원
- 2. 절차 진행일
- 3. 문책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 4. 문책 종류 · 선정 사유 · 문책 실시예정일(제 4호의 경우 문책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위반의 도가 중한 경우		위반의 도가 경한 경우	
			고의 중과실	경과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영 및 급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_도급인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산안법	①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②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④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⑤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⑥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⑦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⑧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⑨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⑩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⑪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②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①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_도급인 ②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_도급인	업무배제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①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③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④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⑤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기본급 감액	경	고	주의

관련법령		위반 의무	위반의 도가 중한 경우		위반의 도가 경한 경우	
			고의 중과실	경과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발	산안법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제69조 제1항·제2항) 설계변경의무(제71조제4항)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제70조제1항)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제1항)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제67조제1항)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건진법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한 라 세 한			
	건산법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전기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공사업법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전기 사업법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급감액		경고, 주의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 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⑩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관련법령		위반 의무	위반의 도가 중한 경우		위반의 도가 경한 경우	
			고의 중과실	경과실	고의 중과실	경과실
발	전력기술 관리법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정보통신 공사업법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업무배제 기본급 감액		경고, 주의
	소방 공사업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연임제한			
	문화재 수리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	연임	제한	업무배제

- ① 연임제한은 업무배제를 병과함.
- ② 주의 2회 누적시 경고처분, 경고3회 이상 누적시 기본급감액으로 의결함.
- ③ 서로 관련이 없는 2개이상의 위반사항이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끝.